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3. 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9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원안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7. 3. 14) 상정 · 수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가. 제안이유

-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신설함 (안 제1조의2).
-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안 제1조의3).
- 구청장은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당해 주차요금 · 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노상 · 노외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 1).
-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 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경형자동차에 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함 (안 별표 1의 비고 제 8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의 설날 연휴기간 및 제 9호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 (안 별표 1의 비고 제16호).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5. 討 論 要 旨

- 김성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 수정이유

- 안 부칙에서 시행일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노상 · 노외 구분없이 동일하게 4만원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에 비하여 환경이 열악하고, 차량파손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노상 · 노외 주차장의 요금을 차등화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 기존의 4만원에서 25%가 인상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인상 조정된 내용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음.

○ 수정안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